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,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 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공고기간 : 2026.04.22. ~ 2026.05.07.(15일간)
2. 공고방법 : 시군구보, 게시판,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
3. 직권말소일시 : 2026.05.08.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예정된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			
나. 당사자 (소유자)	성명	황○주					
	주소 (대장상주소)	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0					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함.				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<건축물대장 현황>						
	대지위치	소유자	층수	구조	용도	건축(연)면적(㎡)	비고
	월롱면 영태리 산10	황○주	1층	흙혼합 벽돌	영업	25.62㎡	영태 1-117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						

5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(031-940-29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2일

파 주 시 장

